

예산총칙

2025년도 본예산

제1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회	계	명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		945,522,229	28,365,665
일	반	회 계	924,011,758	27,720,352
특	별	회 계	21,510,471	645,313
	의	료 급 여 기 금	1,327,274	39,818
	건	축 안 전	276,691	8,300
	주	차 장	19,906,506	597,195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202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.

제4조 2025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.

제5조 2024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예비비는 다음과 같다.

1. 일 반 회 계

- 일반예비비: 6,531,950천원
-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: 1,000,000천원

2. 주차장특별회계: 90,000천원

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각 비목 내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

제9조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보조금, 교부금, 교부세 등은 예산승인(다음 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